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2001년도 핵심업무로 추진 중인 6개 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중 건설산업 공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직접지급사유 중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하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을 보증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 직접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여서 직접 지급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직접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기성확인 요청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신설하였다.

보증면제업체의 부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

는 시점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를 잠정적으로 폐지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가] 추진배경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관행이 만연되어 왔었다.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희생 위에 금융이익을 얻게 되고, 수급사업자는 지급 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현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을 선투입하여 실제 시공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지 못함에도 다시 2회분 이상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동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

이미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소하도급자의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행 하도급법상의 제한적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방안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는 지급보증제도와 직접지급제도가 있는 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직접 지급의무를 확대한다.

한편 원사업자에 비해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인 경우(예/ 도급기성 3개월, 하도급기성 1개월)가 있을 수 있다.

현행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와는 달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아 오히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여부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 위하여는 원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즉,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확인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기성확인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청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에 필요한 협조를 의무화한다.

[다] 기대효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확대되어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완화 및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기피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급보증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 조치계획

※하도급법시행령 개정(6~7월 시행 예정)

<표 참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의 잠정 폐지

[가] 추진배경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시행령 개정(6~7월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안)
<p>제4조 ① (생략) 1. ~ 2. (생략)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신설) ② (생략) ③ (신설)</p>	<p>제4조 ① (생략) 1. ~ 2. (생략)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생략)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만약,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을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의 무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제조합 등의 신용평가결과 최상위등급(예/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AA등급) 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것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0-7호)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여부를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의존하여 결정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지급보증면제

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양산(현재 182개 업체가 AA평가를 받음)됨으로써 면제업체의 부도가 속출했으며, 특히 면제등급을 지난 2000년 11월 1일 상향조정한 이후에도 면제업체 부도가 발생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원사업자의 부도시 실제 시공을 담당한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을 안게 된다.

원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이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조사나 교육·홍보 등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로서는 보증수수료(약 4.5%~2.4%) 부담 때문에 지급보증의무를 기피함으로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보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나] 개선방향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를 잠정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의 이행여부를 발주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발주자에 의한 지급보증의무 이행을 확보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대금지급보증은 발주자의 공사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보증수수료는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원가의 한 요소로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증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향수하는 발주자가 부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급보증수수료가 공사원가의 경비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근거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다] 기대효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자신의 역량을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급보증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고 예외 없는 법적용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불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라] 조치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중 위원회를 열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의 경비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